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 선고 2015가합522588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피 고 1. A

2. B

3. 주식회사 C

변론 종결 2015. 9. 18.

판결 선고 2015. 10. 2.

주 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51,908,572원 및 그중 3,463,839,489원에 대하여 2011. 9. 23.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4. 28.까지는 연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10. 4. 20. 설립된 회사로서, 본점을 서울 용산구 E빌딩 2층에 두고 통신판매 및 인터넷상거래업, 텔레마케팅서비스업 등을 영위하여 왔다.

나. 원고는 D와 사이에 D가 각 대출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담보를 위해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원고는 한국외환은행과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D는 위 은행들로부터 '대출금액'란 기재 금원을 각각 대출받았다.

보증	보증일자	보증기한	보증금액(원)	대출금액(원)	대출은행	연대보증인
①	2011. 6. 27.	2012. 6. 26.	2,240,000,000	2,800,000,000	한국외환은행	피고 A, B
②	2011. 6. 30.	2012. 6. 29.	1,570,000,000	1,962,500,000	중소기업은행	

다. 원고는 2011. 9. 2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한국외환은행에 2,261,419,999원을, 중소기업은행에 1,589,349,497원을 각각 대위변제한 다음, 그중540,004,260원을 회수하여 386,930,007원을 위 대위변제액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였다(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위 대위변제일부터 2012. 11. 30.까지의 기간에 대해 적용된 지연손해금율은 연 15%,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의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한편 위 회수금에 대해 발생한 확정손해금은 합계 88,069,083원이다).

라. D(피고 B이 2011. 8. 2. 대표이사 직을 사임하였고, 같은 날 피고 A가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는

2011. 8. 16.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같은 달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110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다가, 2012. 6. 25. 위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마. 피고 C은 2011. 8. 12. 본점 소재지를 서울 영등포구 F빌딩 1410호, 사업목적은 전자 상거래업, 텔레마케팅서비스업 및 기타 통신판매업 등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A는 2012. 6. 1. 피고 C의 사내이사로 취임하면서 본점을 D의 본점이 있는 위 E빌딩의 지하 1층으로 이전하였다가, 같은 달 11.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다시 본점을 천안시 동남구 G건물 6층으로 옮겼다(피고 A는 2014. 12. 18. 피고 C의 사내이사 직을 사임하였고, D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다 2014. 8. 11. 사임한 바 있는 H이 같은 날 사내이사에 취임하였다).

바. 피고 C은 2012. 7. 2. D와 사이에 계약 기간을 2013. 7. 1.까지, 대금을 개통 건당 11,000원으로 하여 'D가 제공하는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위 회사 상품의 판매조건을 설명한 후, 상품구매 의사가 있는 고객의 이동전화 개통 및 배송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취합하여 위 회사에게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TM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직원들을 채용하였다. 피고 C은 2012. 8.경부터 2013. 10.경 사이에도 주식회사 에넥스텔레콤, 에스케이텔링크 주식회사, 주식회사 인포벨 등과 유사한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이를 포함한다), 을다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A, B은 원고에게 앞서 본 대위변제금 등 합계 3,551,908,572원(한국외환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2,261,419,999원 +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1,589,349,497원 - 회수 원금 386,930,007원 + 확정손해금 88,069,083원) 및 그중 대위변제금 잔액3,463,839,489원(위 합계액에서 확정손해금 부분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원고의 대위변제일인 2011. 9. 23.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이 위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인 2015. 4. 28.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와 피고 C의 상호, 사업내용, 임원 구성 및 사무실 소재지 등에 비추어 피고 C은 D의 영업을 양수한 상호 속용인으로 보아야 한다. 만일 그와 달리 보더라도, 당시 D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A는 위 회사의 회생개시결정을 신청하기 불과 4일 전에 피고 C을 설립하여 사실상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였던바, 결국 피고 C은 기존 회사인 D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법인격을 남용하여 설립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C은 어느모로 보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 B이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영업양수 여부

H과 피고 A가 비슷한 시기에 D와 피고 C의 대표이사 내지 사내이사 등을 역임하여 이들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였으며, 피고 C이 2012. 6.경부터 천안시 동남구 소재G로 사무실을 이전하기까지 약 한달여 간 D의 본점이 위치한 서울 용산구 E빌딩의 지하 1층을 본점 소재지로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 C이 본점 소재지를 위 G로 이전하게 된 경위, 위 회사가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직원들을 채용하고 주식회사 에넥스텔레콤 등 다른 업체들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게 된 시기, 특히 2012. 6. 25. D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된 이후 위 회사는 여전히 사업적 조직·실체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위 각 회사의 설립·운영과 관련한 앞서 본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각 회사 사이에 영업양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거나 피고 C이 D의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20198 판결 등 참조), 달리 위 피고의 영업양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법인격남용 여부

D와 피고 C의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위 1)항에서 살펴 본 사정들에다가, 앞서본 사실과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D의 총 자본금은 2011. 1. 12. 4,058,815,000원에서 그 다음날 507,315,000원으로 감소한 이래 줄곧 같은 수준을 유지하여 온 것에 반해, 피고 C의 그것은 1 이 출자한 50,000,000원이 전부인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양 회사의 자금이 혼용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보유 직원 수 또한 D의 경우 회생개시결정 당시 100여 명, 피고 C의 경우 40여 명 가량인 것으로 보여 차이가 있다), 2 D는 2011. 8.경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인 2012. 1.경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시작하였고, 같은 해 6.경 회생절차가 종결되기에 이르렀던바, 위 회사로서는 채무의 감면·유예 등을 내용으로 한 이와 같은 공적 절차를 통해 향후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이 일정 정도 마련된 이상, 굳이 법인격남용이라는 변칙적인 방법을 통해 채무면탈을 시도하고자 할 동기·유인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고 C이 D로부터 기존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았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위 두 회사의 실질적 동일성을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 오히려 피고 C은 D 뿐만 아니라 다수의 업체들과도 유사한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왔음을 고려할 때 위 두 회사의 동일성보다는 개별성이나 독자성이 보다 두드러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와 같이 위 두 회사 경영진의 인적 구성이 서로 겹치는 측면이 있다는 사정만을 들어, D와 피고 C 간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거나 D가 자신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 C을 설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A,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마용주, 판사 성준규, 판사 이정아